

○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무엇인가요?

- 오미크론의 경우 전파력은 높아진 반면,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은 감소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,
 - 많은 국민들이 3차 백신접종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임
-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동네 의료기관도 코로나19 의료대응에 참여하여,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,
 - 정부도 이러한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발표(1.21일, 1.28일)한 바 있음
-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진료 역량을 확보하고,
 - 코로나19 증상과 다른 질환을 같이 보유한 환자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함
-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①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, ②코로나19 검사, ③검사 후 재택치료(경증)까지 환자에 대해 의료적으로 통합관리하게 됨

○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어떤 유형이 있나요?

-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(RAT)를 실시 하면서, 재택치료기관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
- 다만,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재택치료기관 역할은 하지 않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(RAT)만 실시하는 것으로도 운영 가능

○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
-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심평원)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신청을 해야 함
 - 다만, 2월 3일 기준으로,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람
 - 심평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전산시스템으로 입력하는 방법은 재안내할 예정
- ※ 당초 '코로나19 진료 병·의원'으로 안내되었고 신청서에도 해당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, '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'으로 명칭이 변경됨
- 유의사항으로서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재택치료기관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므로,
 -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재택치료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소를 통해 재택치료기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함

○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신청한 후 운영하다가 그만둘 수 있나요?

-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 여부는 개별 의료기관의 선택사항임
- 따라서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
 - 신속항원검사와 재택치료를 같이 수행하다가 신속항원검사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

○ 서울형 재택치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기존 서울형 모형에 참여하고 있으니 신속항원검사만 운영한다고 체크하면 될까요?

○ 요양기관 운영 현황에 '신속항원검사기관 및 재택치료관리기관'으로 체크

○ 또한, 야간 대응체계에 '의료기관 내'로 체크하되, '의료기관 협력 당직 운영'으로 부기해 주시길 바람

○ 병원에서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참여하고 싶습니다. 가능한가요?

○ 병원급은 기존 방식과 동일한 24시간 대응 "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"으로 운영 가능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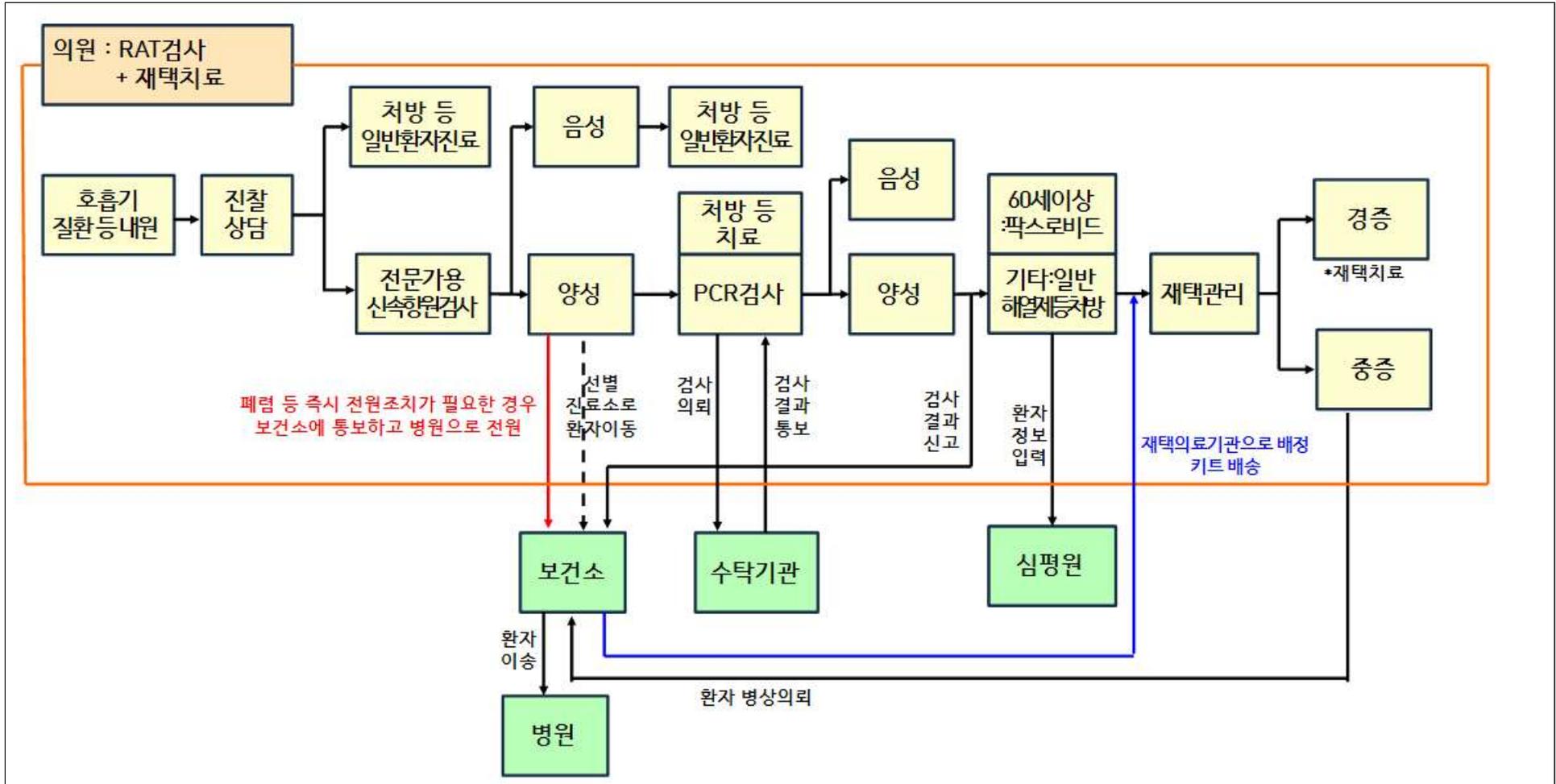
1. 기본정보 작성

- (병·의원 정보) 「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」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요양기관명, 기호, 주소 등 의료기관 기본정보 작성

2. 운영현황 작성

- (운영형태)
 - ① (신속항원검사기관 및 재택치료관리기관)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 검사와 재택치료관리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 선택
 - ② (신속항원검사기관)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만 진행할 경우 선택
- (PCR 검사 여부)
 - ① (가능)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나왔을 때,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PCR 검체 채취하여 결과 분석이 가능하거나 수탁기관 등에 의뢰하는 경우 선택
 - ② (불가능)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나왔을 때, 병·의원 내 PCR 검체 채취가 불가능하여 선별진료소 방문을 안내할 경우 '불가능' 선택
- (야간 대응체계) 운영형태 중 '신속항원검사기관 및 재택치료관리 기관'을 선택한 의료기관만 야간 재택치료 관리 대응 방법 선택
 - ① (의료기관 내) 의료진이 의료기관 내에 상주하며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선택
 - ② (재택치료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협력병원) 주간에는 환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야간에는 재택치료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타 병·의원으로 환자 모니터링 기능을 이관하는 경우 선택
 - ③ (On-call) 주간에는 환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야간에는 On-call로 재택치료를 수행하는 경우 선택

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-검사-치료 흐름도



○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나요?

- 신속항원검사 결과만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, PCR 검사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진 여부를 결정
 - 따라서, 신속항원검사 결과만으로 보건소에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신고하는 것은 아님

○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으로 나온 경우, 해당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PCR 검사도 해야 하나요?

-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, PCR 검사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
 - 필요한 조치를 의료기관 내에서 모두 수행함으로써 환자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
- 다만, 해당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PCR 검체 채취 등이 어려운 경우,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하게 하면 됨

○ 신속항원검사 이후 PCR 검사를 통해 내원한 환자가 확진되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폐쇄되나요?

- 내원한 환자가 확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**의료기관이 폐쇄되는 것은 아니며, 적절한 소독·환기 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운영 가능**
- 각 보건소 방역 역량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, 일반적으로 **의료기관 대상 접촉자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,**
 - 적절한 보호구 착용시 접촉자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므로 **4종 보호세트***를 착용한 의료진의 경우, **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음**
 - * 마스크, 일회용 장갑, 일회용 가운, 페이스실드 또는 고글
 - 또한, **진료 대기 환자도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였다면, 확진자가 내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환자에 대해 격리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음**

< 보건소 접촉자 조사/관리 기준 >

① 시설(의료기관)조사 여부

-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대상 접촉자 조사하지 않음(다만, 대응역량이 가능한 지자체는 조사 가능)

② 접촉자 분류기준

- 적절한 보호구 착용 시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음
- 의료진, 대기자가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 한 경우 접촉자 대상은 아니지만, 보호구 착용이 미흡한 경우가 확인된 경우 지침에 따라 예방접종력 기반 격리 또는 수동감시 조치

③ 밀접접촉자 격리관리 기준

구분	예방접종 접종완료자 (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90일 이하자)	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
밀접접촉자	수동감시(6~7일차 PCR 검사)	7일 격리(6~7일차 PCR 검사)

※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: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

○ **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진료할 때, 검체를 채취할 때 매번 4종 개인보호장비를 모두 교체해야 하나요?**

- 검체 채취 등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**개인보호장비 교체 여부**는 원칙적으로 감염 가능성에 대한 해당 **의료진의 판단**이 중요함
 - 따라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내원한 경우, 공간 환기, 의심환자가 머무른 구역의 표면 소독 등도 질병청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진이 판단해야 함
- 예를 들어, **검체 채취과정에서 비말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운, 장갑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**

< 검사 관련 안내 >

□ **검체채취 시(RAT, PCR) 장소·보호장비**

- **(장소)** 검체채취실은 별도 설치를 권장하나 적절한 환기, 소독 등이 가능한 경우 진료실에서도 수행 가능
- **(보호장비)** 검체채취 시 의료진은 **4종 개인보호장비*** 착용하고, 신속항원 검사(RAT) 결과가 양성인 경우 **가운·장갑 폐기 원칙**

* 마스크(KF94 이상), 안면보호구(고글, 페이스섉�드 등), 일회용 긴팔가운(비닐 또는 부직포 가운), 일회용 장갑(비닐 또는 라텍스 장갑)

□ **신속항원검사 양성자 관련 후속 조치**

- **(소독)** 검체채취 공간, 대기실 등 양성자가 머무른 구역 **표면 소독***
 - *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, 대기실 의자, 진료실 의자(또는 침상), 검체채취실 등 집기 표면 및 오염이 우려되는 표면을 소독제로 소독
 - ※ 양성여부와 상관없이 환자 진료 도구는 사용 후 소독
- **(환기)** 충분한 시간 동안 **자연환기 또는 기계식 환기(음압기) 가능**

* 질병관리청「슬기로운 환기 지침(가이드라인)」(21.10.27.) 참조

- **(기타)** ①PCR을 위한 검체채취 후 **해당 환자에게** 자차, (방역)택시 이용 (대중교통 이용자체) ② **마스크(KF94 이상) 착용**, 타인과 밀접접촉 최소화, 대화금지 등 **방역지침을 준수하여** 귀가 후 **자택 대기 안내**

○ 코로나19 (의심)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?

○ 감염병전담병원 등 환자를 격리시켜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로 관리하고 있으며, 매일 수거하도록 하고 있음

* 일반적으로 격리의료폐기물은 7일마다, 일반의료폐기물은 30일마다 수거해야 하나, 코로나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은 매일 수거해야 함

○ 그러나, 주로 경증환자가 내원하고 처치 등 진료행위가 기존 병원의 입원치료와는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

-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확인될 경우, 사용된 신속항원검사 검사도구 및 4종 보호장비 등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
- 전용용기 투입 전후 내·외부를 소독하고, 최대 15일 내에 배출하여 수거처리 (보관창고는 매일 소독)

○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운영하다가 의사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습니다.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?

○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의사가 입원·격리조치되어 불가피하게 휴업한 경우 손실보상 대상임.

- 정부·지자체 소독 명령을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 비용, 폐쇄·업무정지기간과 8일 이상 폐쇄·업무정지된 기관에 회복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보상

○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운영하다가 같이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.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○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등의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

○ 유급휴가 비용은 1일 최대 13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으며,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

- 자세한 사항은 1339 질병관리청 상담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

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
안내**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
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,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이에 따라 입원·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,
그 밖의 입원·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중복지원 불가)
(시행기간 : 2020.2.17.~별도 공지시 까지)

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

- 신청자격 : 코로나19로 입원·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
 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*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(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(연월차) 제외)를 제공한 사업주
 - *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(입원치료)통지서를 받고 격리(입원)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
 - 지원제외
 - “국가”·“공공기관” 및 “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” 등의 사업주
 -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
 - (중복지원 제외)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
 - ’20.4.1일 0시 이후(입국검역 강화 조치) 모든 국가 입국자
 - * ’20.4.1.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(’20.4.1. 이전 입국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확진·접촉자에 한함)
 - 지원금액 :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(1일 최대 13만원)
 - 신청기관 : 국민연금공단 각지사
 - 신청기간 : 격리해제일(퇴원일) 이후 ~ 별도 공지시까지
 - 신청서류 :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
- ※ 기타 문의는 1339 질병관리청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.